

제251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6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2020-6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2020-6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2020-64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6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7
2020-66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3
2020-67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7
2020-68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5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0-6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조례로 위임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 나.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3조)
- 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통합 계정의 예탁 기간·의무,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규제개혁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2.~8.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목의 경우 “합”을 “증가율”로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로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포함한다)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예탁 기간 및 의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

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8조(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2.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치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조성액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된 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4조)

- 1) 4개 조례 4개 용어
- 2) 양양하다 ⇒ 북돋우다
분기하다 ⇒ 갈라지다
지주목 ⇒ 버팀목
통리 ⇒ 총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3.~7.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포상 조례」의 개정) 「거창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 양양에”을 “순화를 북돋우고”로 개정한다.

제2조(「거창군 은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은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분기하여”를 “갈라져서”로 한다.

제3조(「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의 개정)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4조(「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위임 범위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 변경(안 제1조)

-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안 제6조)

- 1) 위원회 기능 대행 변경: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 ⇒ 거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2)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에서만 통합·운영 가능

다. 용어 순화 및 정비(전 조문)

- 1) 이차보전, 용자 ⇒ 이차지원(안 제1조의2, 제9조~제15조)
- 2) 증빙 ⇒ 증명, 소요되는 ⇒ 필요한

라. 이차지원을 위한 용자 기준 등 규칙으로 규정(안 제13조~제15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등 삭제(안 제7조·제17조·제18조)

- 1) 회계, 결산 및 보고 등, 시행규칙
- 2) 근거: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기금 2020년 4분기 이자지원금 80백만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9.~8.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내에”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거창군”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이자지원”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 이자지원 재원

제5조제3항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지원을 한다.

제9조 조 제목 “(융자대상업체)”를 “(이자지원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의 융자지원”을 “이자지원”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융자금의 용도)”를 “(이자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금”을 “융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차지원을 한다.

제11조 조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 등)”을 “(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융자”를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12조 조 제목 “(융자금의 대출)”을 “(금융기관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금을 지원”을 “이자지원을”로 “융자금을”을 “융자를”로 “융자자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융자금의 대출절차”를 “이자지원 절차”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이차지원을 위한 융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조 제목 “(융자금의 금리 등)”을 “(이자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 제2항) 중 “융자업체”를 “이자지원 대상업체”로 “이차보전금”

을 “이자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2항의 이차보전금”을 “이자지원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자지원 중단)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받은 경우

제16조 중 “용자를”을 “이자지원을”로 한다.

제17조·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소기업기본법</u>」(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u>지방자치법</u>」제142조 및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u>」 제43조에 따라 <u>군내에</u>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42조 및 「<u>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2조의17에 따라 <u>거창군</u>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u>이자지원</u>”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u>군수</u>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u> 재원</p> <p>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u>규칙</u>이 정하는 사항</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중소기업 이차지원</u> 재원</p> <p>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u>규칙</u>에서 정하는 사항</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② (생략)</p> <p>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u>증빙</u>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u>증명</u>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용자받은 경우 제4조 제1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용자대상업체) 제8조의 용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용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용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용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삭 제>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지원을 한다.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차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이자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용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차지원을 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자의 기

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용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 자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용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용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용자금의 금리 등)

①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용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자지원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기관 선정) ① 군수가 이자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용자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 금을 대출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이자지원 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용자조건) 이자지원을 위한 용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용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자율 등)

<삭 제>

① 군수는 이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지원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자지원 중단) 군수는 이자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 군수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용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용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용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용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받은 경우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융자한도액 상향에 따른 기금 이자 지원액 증가

나. 관련조문: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80	320	320	320	320	1,360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년 기금 총액 비용추계: 1분기 80백만원 * 4 = 320백만원

2) 1분기 기금 증가액 20백만원: 60백만원 ⇒ 80백만원

3. 관련 의견

군내 소재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이자지원을 위한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김 성 윤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세입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방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 따라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안 제1조·제3조제4항)
 - 1) 지방세외수입 증대자에 대한 포상은 법령위임 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자치조례 목적조항 입안형식에 맞게 규정
 - 2) 지방세외수입 징수증대 포상 대상인 세외수입을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으로 규정
- 나. 세외수입 징수증대 포상 지급기준을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과 같게 함(안 제4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추경예산 6,000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4.~8.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 그 시행”을 “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세”를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자”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기존 제4항) 중 “제3항에도”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7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세”를 “군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u>사항과 그 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u>군세</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u>사람</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u>사람</u>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u>지급한다</u>.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u>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u>사람</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④ <u>제3항에도</u>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u>제10조에 따른 심의위</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u>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u>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u>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u>자</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u>자</u>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u>지급할 수 있다</u>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u>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u>자</u>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u>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u>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u>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p>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지방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생략)
- ③ (생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군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④ (생략)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0-6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즉시 설치·가동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단 구성, 단장 임무를 정함(안 제4조·제5조)

1)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업무 총괄

2) 단원: 자원봉사 및 재난 업무 담당 군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라. 실무팀 편성을 정함(안 제6조, 별표)

1) 상황총괄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등

2) 활동관리팀: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자원봉사 활동관리 등

마. 지원단 설치장소를 정함(안 제7조)

1) 통합지원본부 위치, 자원봉사자 규모 등 고려

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를 정함(안 제8조)

1) 지원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토록 조치

사.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6. 12~7.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별표)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거창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관리반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따른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 유형이나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장소)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발굴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구성	임무
1. 상황 총괄팀	가. 거창군 소속 자원봉사 담당주사	1)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2)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3)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나. 거창군 소속 자원봉사 담당공무원	1)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2) 지원단 관련 행정·재정 지원
	다. 거창군 자원봉사 센터 전산 관련 직원	1)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2) 자원봉사 모집·등록·교육 배치 관련 사항 총괄
2. 활동 관리 지원팀	가. 거창군 자원봉사 센터 교육 관련 직원	1)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2)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나. 거창군 자원 봉사협의회장	1)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2)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다. 대한적십자사 거창군지구회장	1)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2) 자원봉사자 상해나 질병 시 지원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 1) 제조업체 등 ⇒ 기업(안 제1조·제3조·제4조)
- 2)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3) 근로자 ⇒ 노동자(안 제1조~제4조)

가) 경상남도 권고사항

나.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1) 29세 ⇒ 34세

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7.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제3조(지원대상)

나. 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을 확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5조)

1)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함(안 제6조)

1) 당연직 8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9,412백만원 확보

다. 협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7.~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3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나. 관련조문: 제5조(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9,412	500	500	500	500	11,412

3. 관련 의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514백만원)

- 1.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84백만원
- 2. 재난문자전광판 구축: 193백만원
- 3. 폭염대비: 26백만원
- 4. 한파대비: 93백만원
- 5. 가축질병 예방사업: 118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0-6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20. 7.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2)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2.~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